

한국목록규칙 제4판 초안의 지도자료 목록규칙 분석

Analysis of Cataloguing Rules for Cartographic Materials in KCR4 Draft

황옥경, 남태우,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Hwang Ok-Gyung, Nam Tae-Woo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

한국목록규칙 제4판 초안의 [지도자료]를 위한 목록 규칙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AACR2R(1998), NCR, 그리고 ISBD에서의 해당 목록 규칙들과 비교·분석한 뒤, 더욱 효율적인 지도자료 조직을 위한 한국목록규칙 제4판 초안의 수정안들을 제시하였다.

1. 서론

지도는 지구와 천체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요소만 취사선택하여 지면에 축소해서 재표현한 것이다. 지도에는 제작 당시 필요하였던 요소들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지형, 행정, 문화, 사회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정보자료가 된다. 지도의 정보적인 가치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현상, 위치, 거리, 기타 여러 관계를 축척과 평면도법에 의해 그 위치를 일정한 비율로 표시해서 지면을 통해 쉽게 이해시키고 한 지역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재로서의 지도자료가 효율적으로 조직되어질 수 있도록, 1983년 제정된 한국목록규칙 제3판에 대한 개정 작업의 결과로 마련된 한국목록규칙 제4판 초안(이하 "KCR4 초안")에서의 지도자료 편목

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기본적으로 KCR4 초안에서 지도자료를 위한 목록 규칙 중에 오류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 내용을 AACR2R(1998)의 CHAPTER 3 CARTOGRAPHIC MATERIALS(이하 AACR2R), NCR(1996)의 第 4章 地圖資料(이하 NCR), 그리고 ISBD(CM)(1991)(이하 ISBD)과 비교·분석한 뒤 관련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3. 분석 내용

1) 기술의 정보원

KCR4 초안
3.0.3 기술의 정보원
3.0.3.1 (정보원의 우선순위)
1) 제자란, 또는 이를 대치하는 것
2) 지도자료의 다른 부분
3) 인쇄된 딸림자료나 보관용기, 지구의의 받침대 등
4) 지도자료 이외의 정보원
3.0.3.2 (기술사항별 정보원)
5) 형태사항: 해당 지도자료 자체에서 ※
3.0.3.3 (복제본의 정보원) 1.0.3.3의 규정에 준한다.
AACR2R
3.0B2. 으뜸 정보원
a) 지도 자료 자체
b) 용기나 지구의의 받침대 등
으뜸정보원이 없는 경우 인쇄된 딸림자료에서
3.0B3. 기술사항별 정보원
형태사항 어디에서나 ※

KCR4 초안의 3.0.3.2 경우 정보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제자란 또는 이를 대치하는 것'이고 둘째는 '해당 지도자료 자체에서', 그리고 셋째는 '어디에서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혼란스러운 점은 '해당 지도자료 자체'와 '지도자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3.0.3.1 (정보원의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하는 점이다.

우선, AACR2R의 3.0B2. 으뜸 정보원을 보면 지도자료 자체와 용기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SBD의 경우 역시 0.5 정보원의 종류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지도자료 자체는 지도자료에 포함되어지는 개념이며 지도자료 자체는 용기나 딸림자료와 구분되어 진다.

- 1. 지도자료
 - A. 지도자료 자체

- B. 용기나 상자, 지구의 받침대 등
 - C. 딸림자료의 텍스트나 브로슈어
2. 목록이나 서지 등 지도자료 이외의 것

이렇듯 AACR2R 및 ISBD에서는 지도자료와 지도자료 자체가 구분이 되며 지도자료 자체에는 딸림자료나 보관용기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KCR4 초안의 3.0.3.1에서 보면 '지도자료의 다른 부분'과 '딸림자료나 보관용기'를 구분하고 있어 지도자료(지도자료 자체가 아닌)가 딸림자료나 보관용기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여기서의 '지도자료' 개념은 AACR2R 및 ISBD에서의 '지도자료 자체'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4) 지도자료 이외의 정보원'이라는 조문은 그 이전의 1), 2), 3)이 지도자료에 나타난 정보원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NCR의 경우에는 4.0.3.2 (각종서지적사항의 정보원)의 ㄷ)에서 형태에 관한 정보원은 '그 지도자료로부터' 구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자료 자체라는 문구는 나타나지 않지만 4.0.3.1의 (기술의 정보원)을 보면 KCR4 초안에서의 3.0.3.1 (정보원의 우선순위)와 동일하여 NCR 역시 지도자료에 대한 개념이 지도자료 자체의 개념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도자료'와 '지도자료 자체'의 구별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3.0.3.1의 2)는 '지도자료 자체에서 1)을 제외한 부분'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가지, KCR4 초안의 3.5.2 기타 형태사항 중의 3)을 보면 지도자료의 대지나 구체의 받침대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게 되어 있고, 3.5.3 크기의 9)를 보면 보관용기의 크기도 기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3.5.4 딸림자료에서는 딸림자료에 대해 기술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3.2에서 5)형태사항의 정보원을 '해당 지도자료 자체에서'로 한정할 경

우 이들 형태사항에 대한 기술이 불가하게 된다.

따라서 5)형태사항의 '해당 지도자료 자체에서'는 '어디에서나'로, 혹은 '해당 지도자료로부터'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술방법

AACR2R
<p>3.0J. 부분 기술 혹은 전체 기술</p> <p>3.0J1. 편목처의 필요에 따라 지도 자료 전체를하나의 컬렉션으로 기술하거나 개별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전체로서 편목되어 있는데 개별 기술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제 13장(※)을 참조한다. 전체를 기준으로 할 지 개별 기준으로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를 기준으로 기술한다.</p>

AACR2R의 13.6.에서는 멀티수준의 기술에 관해 규정해 두고 있다.

ISBD 역시 collection 수준의 기술이나, item 수준의 기술을 두고 부록 A: 멀티수준의 기술에서 예시와 더불어 이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NCR 및 KCR4 초안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복수의 map이나 sheet이 하나의 아이টে임을 이루고 있는 경우,

① 전체를 하나의 item으로만 기술하거나,

② 하나하나의 map이나 sheet을 개별적인 item으로 기술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map이나 sheet에 대한 기술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기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나누어진 map과 sheet을 연결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체를 하나의 item으로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각 부분에 대한 기술을 해주는 단

계적인 기술, 즉 multilevel 기술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3) 자료의 유형

KCR4 초안
<p>3.1.2.1 (자료의 유형) '지도자료' 또는 'map'을 자료유형으로 한다.</p>
AACR2R
<p>3.1C1 표제사항 바로 다음에 1.1C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적절한 자료유형표시를 해준다. Central Europe [GMD]</p>

KCR4 초안의 경우 제1장 기술총칙의 1.1.2.1. (자료의 유형)에서는 자료 구분이 "지도자료(cartographic material)"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1.2.1 (자료의 유형)에서는, "'지도자료' 또는 'map'"으로 되어있어 혼동을 주고 있다.

또한 KCR4 초안의 3.5.1.1에 제시된 특정 자료종별에서 보면 'map'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자료유형표시의 'map'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map'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정의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AACR2R의 경우에서도 1.1C1에서 자료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리스트 2에서의 'map' 및 'globe'를 'cartographic material'로 바꾸어야 한다는 안이 Joint Steering Committee(JSC) for the AACR2에 제시되었고 2000년 9월의 미팅에서 이를 받아들여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cartographic material'이 'map'보다는 더 포괄적인 용어임을 감안한다면 KCR4 초안에서의 자료유형표시 역시 '지도자료' 또는 'cartographic material'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자료의 유형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은 전자자원인 지도자료의 경우

이다. 현재 KCR4 초안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자자원의 지도자료는 [전자자료]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자료종별로 전자 디스크, 전자 광디스크, 전자 디스크 카트리지... 등의 용어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기술 대상이 지도자료임을 나타내거나 지도자료의 특정자료종별, 즉 단면도, 도표, 원격탐사도, 지도 등등을 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AACR2R의 0.24와 관련한 논쟁 및 carrier와 content 중에서 어느 것을 기술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쟁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물론 KCR4 초안의 9.3.2 기술방법에서 '전자 지도 데이터(electronic map data)'를 자료 내용에 대한 기술 용어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굳이 이 용어를 이용할 경우에도 자료의 유형이 [전자자료]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자(electronic)'라는 용어를 부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으로 보이며 '지도(map)'라는 용어는 '지도자료(cartographic material)'로 수정되어야 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지도자료임을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특정자료종별을 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자원인 지도자료의 유형 표시로는 [지도자료 (전자자원)] 과 같은 표시법을 제안하는 바이며, 9.3.2 기술방법에서는 지도자료의 특정자료종별을 표시하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4) 축척 및 좌표사항

KCR4 초안	
3.3.1.2 (기술방법)	
축척	1:50,000
축척	약 1:100,000 ※
Scale	1:63,360
Scale	ca. 1:36,000,000 ※

AACR2R	
3.3B. 축척표시	
만약 으뜸정보원이나 딸림자료로부터 축척표시를 찾지 못하는 경우 알고있는 크기를 막대 그래프나 모눈과 비교하여 축척을 계산하여 각괄호 안에 ca.를 앞에 붙여 축척을 표시한다. ※※	
축척 [ca. 1:63,360]	

KCR4 초안의 3.3.1.2에서 ※ 표시가 있는 두 예는 '약' 혹은 'ca.'가 어떤 경우에 쓰여지는 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혼란스럽다. 축척표시가 각괄호 안에 넣어져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으뜸정보원이나 딸림자료로부터 채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들 정보원에 원래 '약 1:100,000'이라든가 'ca. 1:36,000,000'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그대로 옮긴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따라서 '약' 및 'ca.'의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 표시 사항과 관련하여, ISBD에서도 보면 이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ca.'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approx.'라든가 'env.'를 예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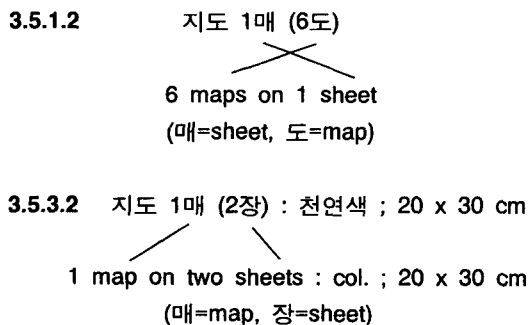
그러나 KCR4 초안이나 NCR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규정은, 굳이 축척표시가 되어 있는 자료와 축척표시는 없으나 계산되어진 자료간의 구별을 위해서라고 하기보다는, 지도자료에서의 축척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명시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규정이라 여겨진다.

5) 형태사항

KCR4 초안	
3.5.1.2 (기술방법) ※	
2) 지도자료의 매수와 수록 도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지도의 매수 다음에 도수를 부기한다.	
지도 1매 (6도) ※	
6 maps on 1 sheet ※	
3.5.2.2 (기술방법)의 1)	채색은 전부 또는 일부가 채색지도인 경우 기술한다. 지도 이외의 내용(경계 등)이 채색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시한다.
지도 1매 : 천연색	
지도 4매 : 2색 ※※	
지도 10매 : 일부 천연색	
1 map : col.	
4 maps : 2 col.	
10 maps : some col.	
3.5.3.2 (기술방법)	
3) 지도 1매 (2장) : 천연색 ; 20 x 30 cm ※	
1 map on two sheets : col. ; 20 x 30 cm	
AACR2R	
3.5C3. 아이템의 전체나 부분이 채색된 경우, 이를 명기한다. 태두리 등과 같은 지도 이외의 것과 관련한 채색은 무시한다.	
1 map : col.	
4 maps : 2 col.	
10 maps : some col.	

3.5.1.2와 3.5.3.2의 예시에서 ※ 표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동일한 영어 표현을 두고 한글로는 전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1. '~ map(s) on ~sheet(s)'라는 동일한 영어 구문에 대한 한글 구문은 상반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 'sheet'에 해당하는 용어로 '매'와 '장'이 쓰이고 있으며, 'map'에 관한 용어로 '도'와 '매'가 같이 쓰이고 있어 용어 사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NCR의 경우에는, '4.5.1.2A에서 매수와 도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요에 따라 매수 뒤에 도수를 부기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도 1매 (3도)' 혹은 '지도 4매 (1도)'라고 예시되어 있고, 4.5.1.2에서 '한 장짜리의 지도자료는 매수로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 적어도 '매'는 장수를 의미하며 '도'는 지도수를 의미한다는 일관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KCR4 초안에서의 이러한 혼란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구문 형식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며 용어별 개념을 명확히 하여 용어사용에 일관성을 두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3.5.2.2의 ※※ 표시 부분을 보면, '지도 4매 : 2색'은 '4 maps : 2 col.'에 해당되는 기술인데, 이 경우 '2색'의 의미가 매우 혼란을 주고 있다. '지도 4매 : 2색'은 4매의 지도가 2가지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KCR4 초안이 상당부분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지는 NCR에서도 4.5.2.2. (기록방법)의 예시에서 '지도 1매 : 4색쇄'라고 하여 4색을 4가지 색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도 1매에 대한 기술을 두고 4색이라 했으니 채색된 지도의 수가 4매라는 뜻은 아님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나 AACR2R에서의 '4 maps : 2 col.'가 의미하는 것은 4 maps 중 2 maps가 채색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 4매 : 2색'이라는 표기는 '지

도 4매 : 2매 천연색'으로 그 뜻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기타

ISBD의 부록 E에서는 영어로 지도자료를 편목한 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의 한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Middle East / J. Bartholomew & Son. 1:4 000 000 ; conic proj. Edinburgh : Bartholomew, cop. 1985. 1 map : col. ; 71 x 93 cm. Folded in cover 26 x 14 cm. (World travel map). ISBN 0 7028 0337 5.

KCR4 초안이나 NCR, AACR2R에서는 이렇게 온전한 목록의 예들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각 장별로 필요에 따라 해당 예만을 부분적으로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지도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보여주는 ISBD의 경우가 지도자료에 대한 편목의 이해도를 더욱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3.1 (정보원의 우선순위)의 '2) 지도 자료의 다른 부분'은 '지도자료 자체에서 1)을 제외한 부분'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3.0.3.2 (기술사항별 정보원)에서 5)형태 사항의 '해당 지도자료 자체에서'는 '어디에서나', 혹은 '해당 지도자료로부터'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3.0.5 기술방법에서 부분과 전체, item과

collection 수준의 기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멀티수준의 기술에 대한 기술방법이 규정되어야 한다.

넷째, 3.1.2.1 (자료의 유형)에서, '지도자료' 또는 'map'은 '지도자료' 또는 'cartographic material'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3.3.1 축척표시에서 '약' 및 'ca.'에 대한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3.5.1.2와 3.5.3.2에서의 기타 형태사항 기술방법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map과 sheet, item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더불어 정확한 용어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기술에 있어서의 구문규칙도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3.5.2.2의 기타 형태사항 기술방법에서 '지도 4매 : 2색'이라는 표기는 2색이 2가지 색이라는 의미와 2매가 천연색이라는 의미간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도 4매 : 2매 천연색'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현재와 같이 각 기술요소별로 해당되는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예시하기보다는 해당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하나의 아이템 전체를 기술하여 예시해 주는 것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아홉째, 전자자원인 지도자료의 유형 표시로는 '[지도자료 (전자자원)]'과 같은 표시법을 제안하는 바이며, 9.3.2 기술방법에서는 기존의 '전자 지도 데이터(electronic map data)'대신에 지도자료의 특정자료종별을 표시하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KCR4 초안에서의 지도자료 목록규칙과 관련한 제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자료로서 향

후 KCR4 제정시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방동인, 한국의 지도.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p. 30.

Report in the cataloging workshop on digital cartographic material, Edmonton, Alberta, May 2000, *ACMLA Bulletin 110*, Winter 2001.

Parker, Velma. Cataloguing Map Series and Serials. *Catalogu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v.27 no. 1/2.

Welch, Grace D. and Williams, Frank. Cataloguing Digital Cartographic Materials. *Catalogu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v.27 no. 1/2.

<http://www.carl.org/tlc/crs/map0001.htm>

<별첨>

지도자료를 위한 주요 목록규칙들의 매핑표

KCR4법 표준	NCR	AACR2R	ISBD
3.0 총칙 3.0.1 기술의 범위 3.0.2 기술의 대상 3.0.3 기술의 정보원 3.0.4 기술구조와 계층소의 기재순서 3.0.5 기술방법	4.0 총칙 4.0.1 기술의 범위 4.0.2 기술의대상과 그 서지 레벨 4.0.3 기술의 정보원 4.0.4 기술해야할 서지적사항과 그 기록순서 4.0.5 기술의 정조(精粗) 4.0.6 기록의 방법	3.0 총칙 3.0A 범위 3.0B 정보원 3.0C 구두법 3.0D 기술의 수준 3.0E 기술의 언어와 글자체 3.0F 오기, 오식 3.0G 엑센트와 다른발음구분 3.0H 여러 으뜸정보원을 가진 자료 3.0J 부분 혹은 전체 기술	0. 예비규칙 0.1 범위, 목적 및 이용 0.2 정의 0.3 ISBD(G)와 ISBD(CM)간의 비교 0.4 구두법 0.5 정보원 0.6 기술 언어와 글자체 0.7 요약과 약어 0.8 대문자 0.9 예 0.10 오기, 오식 0.11 기호 등
3.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3.1.0 총칙 3.1.1 본표제 3.1.2 자료유형 3.1.3 대등표제 3.1.4 표제관련정보 3.1.5 권차, 회차, 년차표시 3.1.6 책임표시	4.1 표제와 책임표시에 관한 사항 4.1.1 본표제 4.1.2 자료종별(임의규정) 4.1.3 명등표제 4.1.4 표제관련정보 4.1.5 책임표시	3.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3.1A 예비규칙 3.1B 본표제 3.1C 일반자료유형(임의규정) 3.1D 대등표제 3.1E 기타 표제정보 3.1F 책임표시 3.1G 총서명이 없는 자료	1 표제와 책임표시 사항 1.1 본표제 1.2 일반자료유형(임의규정) 1.3 대등표제 1.4 기타 표제정보 1.5 책임표시
3.2 판사항 3.2.0 총칙 3.2.1 판표시 3.2.2 특정판의 책임표시 3.2.3 부차적 판표시 3.2.4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	4.2 판사항 4.2.1 판표시 4.2.2 특정판의 책임표시 4.2.3 부가적 판표시 4.2.4 부가적 판의 책임표시	3.2 판사항 3.2A 예비규칙 3.2B 판표시 3.2C 판에 관련된 책임표시 3.2D 개정판에 관련된 사항 3.2E 개정판의 책임표시사항	2 판사항 2.1 판표시 2.3 판의 책임표시
3.3 축적 및 좌표사항 3.3.0 총칙 3.3.1 축척표시 3.3.2 도범표시 3.3.3 경위도, 분점표시	4.3 수치 데이터에 관한 사항 4.3.0 부칙 4.3.1 축척표시 4.3.2 부영범표시 4.3.3 경위도, 분점표시(임의규정)	3.3 수치 데이터 사항 3.3A 예비규칙 3.3B 축척 표시 3.3C 도범표시 3.3D 경위도, 분점 표시(임의규정)	3. 수치 데이터 사항 3.1 축척표시 3.2 도범표시 3.3 경위도표시 (임의규정)
3.4 발행사항 3.4.0 총칙 3.4.1 발행처, 배포처 3.4.2 발행처, 배포처 3.4.3 발행년, 배포년 3.4.4 제작사항	4.4 출판, 배포 등에 관한 사항	3.4 출판, 배포 등 3.4A 예비규칙 3.4B 일반규칙 3.4C 출판처, 배포처 등 3.4D 출판처, 배포처 등 3.4E 출판처, 배포처의 역할에 대한 기술 (임의규정) 3.4F 출판일 및 배포일 등 3.4G 제작자, 제작자, 제작일 등	4. 출판, 배포 등 사항 4.1 출판처, 배포처 4.2 출판처, 배포처 4.3 배포처 사항 (임의규정) 4.4 출판일, 배포일 4.5 제작자 (임의규정) 4.6 제작자명 (임의규정) 4.7 제작일 (임의규정) 4.8 복수 사례
3.5 형태사항 3.5.0 총칙 3.5.1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3.5.2 기타 형태사항 3.5.3 크기 3.5.4 딸림자료	4.5 형태사항 4.5.0 부칙 4.5.1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4.5.2 그 외의 형태적 세목 4.5.3 크기 4.5.4 부속자료	3.5 형태기술사항 3.5A 예비규칙 3.5B 자료의 범위 3.5C 기타 물리적 세부사항 3.5D 크기 3.5E 딸림자료	5. 형태사항 5.1 특정자료 종별 및 자료범위 5.2 기타 형태사항 5.3 크기 5.4 딸림자료 (임의규정)
3.6 총서사항 3.6.0 총칙 3.6.1 총서의 본표제 3.6.2 총서의 대등표제 3.6.3 총서의 표제관련정보 3.6.4 총서의 책임표시 3.6.5 총서의 ISSN 3.6.6 총서의 권호 3.6.7 하위총서	4.6 총서사항	3.6 총서사항 3.6A 예비규칙 3.6A1 구두법 3.6B 시리즈표시	6. 총서사항 6.1 총서의 본표제 6.2 총서의 대등표제 6.3 총서의 표제관련정보 6.4 총서의 책임표시 6.5 총서의 ISSN 6.6 총서의 권호
3.7 주기사항 3.7.0 총칙 3.7.1 주기의 범위 3.7.2 기술방법 3.7.3 주기의 종류와 기재순서	4.7 주기사항 4.7.0 부칙 4.7.1 주기 4.7.2 기호의 방법 4.7.3 주기의 종류	3.7 주기사항 3.7A 예비규칙 3.7B 주기	7. 주기사항 7.1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주기 7.2 판사항 및 서지력 주기 7.3 수치데이터사항 주기 7.4 출판, 배포사항 주기 7.5 형태사항 주기 7.6 총서사항 주기 7.7 내용 및 주제 관련 주기
3.8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3.8.0 총칙 3.8.1 표준번호 3.8.2 등목표제 3.8.3 입수조건표시	4.8 표준번호, 입수조건사항	3.8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3.8A 예비규칙 3.8B 표준번호 3.8C Key-title 3.8D 입수조건사항 (임의규정) 3.8E Qualification 3.9 추가항목 3.10 여러자료유형으로 구성된 자료 3.11 복사, 사진복사 및 다른 복제품	8. 표준번호와 입수조건사항 8.1 표준번호 8.3 입수조건사항 부록 A: 열거수준 기술 부록 B: 양방향 레코드 부록 C: 특정자료종별 부록 D: 열어 예 부록 E: 열어 예 색인